의안번호	2214859
의 뢰 인	조계원의원
회 답 일	2026.1.26.
추계번호	25C6779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체육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945억 3,500만원(연평균 189억 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생활안정자금 대여 (안 제13조)	18,907	18,907	18,907	18,907	18,907	94,535	18,90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3조(자금의 대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3조(자금의 대여)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서는 생활안정자금의 대여 대상·금액 등 필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예술인생활안정자금 사업, 이하 같음)에서의 사업방식과 편성된 예산액을 준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함

❑ 유사사례 사업예산 중 융자금의 경우 거치기간 이후에 원금회수액이 발생하게 되는데,[1]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대출 사업의 경우 이 원금회수액을 2023년부터 사업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원금회수에 따른 사업비 재투입 부분은 고려하지 아니함

○ 참고로 2025년 사업예산 중 융자금 180억에서 융자원금회수액은 147억 8,100만원(복권기금 32억 1,900만원)으로 82.1%를 차지함

○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대출 사업 중 대출유형별 대출잔액과 연체율은 다음과 같음

【표 2】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연체 현황

('25.12월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대출잔액(A)	연체채권 잔액(B)	연체율(B/A)
생활안정자금	23,534	2,334	9.9%
전세자금	37,548	589	1.6%
합계	61,082	2,923	4.8%

자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과 예산 반영 시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

1)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별도의 수입 계정으로 관리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사업 추진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안 제13조)

○ 체육인생활안정자금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융자금과 융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각각 필요함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사업을 하고 있고, 이를 유사사례로 보고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산출함

- 융자금-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1761-305): 180억원(2025년 기준)
- 운영비- 예술인생활안정자금(1761-306): 9억 700만원(2025년 기준)

【표 3】 예술인생활정자금 사업 개요

구분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보유자	
2025년 예산	90억	90억
대출내용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전세자금
대출한도	최고 7백만원 이내 (긴급 생활자금 최고 5백만원까지)	최고 1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이율	2.5% (연체시 5.5%)	1.95% (연체시 4.95%)
상환기간	비거치 선택시 3년 *조기상환 가능	2년 (동일주택 3회 연장가능, 최장 8년)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만기일시 상환
거치기간	비거치 또는 1년	-
시행시기	매월	상·중·하반기 각 1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추계기간 동안 융자금과 운영비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결과, 체육인 생활안정자금 사업 시행을 위한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융자금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0
운영비	907	907	907	907	907	4,535
합계	18,907	18,907	18,907	18,907	18,907	94,53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Ⅳ.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사업을 유사사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 사업의 대여 대상, 금액에 따라 추계액은 달라질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